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골 재 채 취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노형욱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개정이유

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요구 및 보고 주체에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추가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업무 대행기관 추가(안 제1조의3)

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요구 및 보고 주체에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추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7. 0. ~ 7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3제2항 중 “한다) 또는”을 “한다),”로, “한다”를 “한다) 또는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골재산업연구원(이하 “한국골재산업연구원”이라 한다)로, “한국지질자원연구원 또는 협회를”을 “한국지질자원연구원, 협회 또는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한국지질자원연구원 또는 협회가”를 “한국지질자원연구원, 협회 또는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의3(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)	제1조의3(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토교통부장관[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의2제3항 및 「골재채취법 시행령」 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라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(이하 “한국지질자원연구원”이라 한다)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에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또는 협회를 말한다. 이하 제4항 및 제3조제4항에서 같다]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관계 행정기관의 장, 관계 전문기관의 장 및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골재자원 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장에게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한다), -----</u> ----- <u>한다)</u> <u>또는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골재산업연구원(이하 “한국골재산업연구원”이라 한다---</u> <u>한국지질자원연구원, 협회 또는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-----</u> ----- ----- -----

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그 분기 종료 후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 도록 요청할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 -----.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⑤ 법 제4조의2제3항 및 영 제5 조에 따라 <u>한국지질자원연구원</u> <u>또는 협회가</u> 골재자원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·운영 업무를 대 행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 까지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의 운영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해야 한다.	⑤ ----- ----- <u>한국지질자원연구원,</u> <u>협회 또는 한국골재산업연구원</u> <u>이</u> ----- ----- ----- -----.